모욕·폭행·상해·명예훼손

[대법원 2015. 12. 23. 2015도9951]

【판시사항】



- [1] 헌법상 보장되는 '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'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- [2]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, 공동피고 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(적극) /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,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는데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 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,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(적극)

【판결요지】

- [1] 헌법상 보장되는 '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'는 변호인의 '충분한 조력'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, 피고인에게 국 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.
- [2]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.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,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,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,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.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, 따라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.

【참조조문】

- [1] 헌법 제12조 제4항
- [2] 헌법 제12조 제4항, 형사소송법 제33조,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, 제7항

【참조판례】

[1] 대법원 2012. 2. 16.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(공2012상, 480)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들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임동언

【원심판결】서울서부지법 2015. 6. 11. 선고 2014노1566 판결

【주문】

1

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 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- 1.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 - 가.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
- 헌법상 보장되는 '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'는 변호인의 '충분한 조력'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,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할 의무가 포함된다(대법원 2012. 2. 16.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).
 -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.
- 이와 같이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,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 사를 지정하였을 때,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, 국 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렵다.
 - 결국 이로 인하여 위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,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.
 - 나. 피고인들의 이해 상반
-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 있는 부분은, 피고인 1이 팔꿈치로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.
- 한편,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,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.
 -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볼 때,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, 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된다.

다.

피고인 2를 위한 담당변호사 지정

- 1) 기록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- 가)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 법무법인 연명으로 '변호인선임서'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, 위 서면의 '사건'란에는 '항소'라고 기재되어 있고, 본문에는 "위 사건에 관하여 공소외 1 법무법인 담당변호사: 공소외 2,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5, 공소외 6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합니다.

"라고 기재되어 있다.

- 나)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될 당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의 '담당변호인지정서'가 함께 제출되었는데, 위 지정서의 '담당변호인'란에는 '공소외 2'만 기재되어 있다.
- 다) 그 후 원심법원에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로 피고인 2를 위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, 위 항소이유서의 마지막부분에는 담당변호사로 '공소외 2,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5, 공소외 6'이 기재되어 있고, 각 변호사의 날인이 있다.
- 2)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"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"라고, 같은 조 제7항은 "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.
 - "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, 담당변호사의 지정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.
-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변호인선임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변호사 공소외 5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, 위 항소이 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변호사 공소외 5의 기명날인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, 비록 위 담당변호 인지정서에는 변호사 공소외 2만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으나, 공소외 1 법무법인이 피고인 2의 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변호사 공소외 5도 지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.
- 라. 피고인 1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
- 기록에 의하면, 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, 이에 원심법원이 위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- 마.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 침해
-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데, 피고인 2가 공소외 1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법무법인이 변호사 공소외 5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도, 원심법원이 같은 변호사를 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,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.
 -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- 2.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-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,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- 3. 결론
-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,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용덕(재판장) 박보영 김신(주심) 권순일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